

#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745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3. 4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최정훈의원 외 2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3. 7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3. 2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이 중요한 데도 제1차 정례회기간인 7월중에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연관성이 결여 되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어 행정의 일관성·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코자 함.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개정법령에 의거 개정하기 위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는 9월,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(안 제4조제1항)  
나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(안 제4조제2항)  
다.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 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(안 제5조제1항)  
라.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 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(안 제5조제2항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,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은 2000. 3. 2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조례 제정 이후 2차에 걸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의 연관성이 결여되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,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경우 예산편성 및 익년도 업무계획 수립, 각종 업무의 마무리 등 집행부 업무가 과중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#### 6. 토 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2002. 3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